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2134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21340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소204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효정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변론 종결2021. 10. 21.

판결 선고2021. 11. 11.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소204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가 2007. 12. 8.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과 '피고가 D에게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등을 대여하고, 엘피지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이 2011.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D의 가스 사용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D에 대한 가스 사용대금 채권은 2014. 9. 30. 당시 31,934,298원이 남아 있었다.

라. D이 2014. 10. 16.경 C 영업을 포괄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D의 지위를 승계하고 D의 피고에 대한 가스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주식회사 H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가스 사용대금으로 2014. 10. 31.에 10,000,000원, 2014. 11. 29.에 10,000,000원, 2015. 2. 28.에 13,065,702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이 2017. 12. 19. 원고에게 주식회사 H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인천지방법원이 2018.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1, 이하 관련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5. 30.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제7순위로 원고(채권금액 100,000,000원)에게 37,686,7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가 2019. 6. 14. 배당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 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D에 대하여 2014. 9. 30. 당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31,934,298원의 가스 사용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가 2014. 10. 31.에 10,000,000원, 2014. 11. 29.에 10,000,000원, 2015. 2. 28.에 13,065,702원, 합계 33,065,702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 없이 부당하게 2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000,000원을 배당받지 못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묵시적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D이 설립한 주식회사 H가 2014. 10. 16.경 이 사건 공급계약 상 D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H에게 엘피지 가스를 계속 공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묵시적으로 D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2018년경 주식회사 H에 대하여 78,788,892원 상당의 가스 사용대금 채권이 남아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2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고(민법 제186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경매 당시에도 계속하여 주식회사 H가 아닌 D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H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D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쓰여진 수단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D은 주식회사 H의 피고에 대한 가스 사용대금 채무도 책임져야 하고, D의 이 사건 공급계약 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후 주식회사 H의 채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H가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D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쓰여진 수단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명한

판사최희동

판사안철범